

맥브라이드(McBride) 표14와 표15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란

(1)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 상실 평가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 「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2)로 구성되어 있다.

(2)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 천개의 노동능력상실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추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술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수준과 오늘날의 의학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표의 이용 방법

(1)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노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 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기재해 두었다.

(2)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으면 된다. 만일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려면 맥브라이드 테이블2를 찾아 해당 비율만큼 가감하면 된다.

(3)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그 합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장해가 50%, 30%, 10%인 경우

① $50\% + (100 - 50) * 30\% = 65\%$

② $65\% + (100 - 65) * 10\% = 68.5\%$ (1978년도 발간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 제12페이지 참조)

McBride 표14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잘쓰는 팔 100%

절단(amputations)

반대측 90/100%

I. 상지(arm)

1. 견갑관절 이단술	100	50	50	53	55	57	59	60	61	63	65
2. 견갑관절과 주관절 사이	100	50	50	53	55	57	59	60	61	63	65
3. 주관절과 손 사이	80	40	40	43	45	47	49	50	51	53	55

II. 수지(손가락, fingers)

위팔장애율 전신장애율

1. 무지(제1지)	100%	50/100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24	12	12	13	17	19	22	25	27	31	34
b.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12	6	6	8	10	12	15	17	20	23	26
2. 시지(제2지)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14	7	7	9	11	13	16	18	21	24	27
b.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7	3	3	4	5	7	9	11	14	16	18
3. 중지(제3지)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12	6	6	8	10	12	15	17	20	23	26
b.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6	3	3	4	5	7	9	11	14	16	19
4. 환지(제4지, 약지)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8	4	4	5	6	8	10	12	15	17	19
b.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4	2	2	3	4	6	8	10	13	15	17
5. 소지(제5지)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6	3	3	4	5	7	9	11	14	16	18
b.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3	1	1	2	3	4	6	8	10	12	14
6. 무지와 시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44	22	22	24	26	29	32	35	38	42	46
7. 무지, 시지, 중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60	30	30	32	34	37	40	43	46	50	54
8. 무지, 시지, 중지 및 환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70	35	35	37	39	42	45	48	51	55	59
9. 한손 수지 전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80	40	40	42	44	47	50	53	56	60	64
10. 시지와 중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32	16	16	17	19	21	24	27	30	33	36
11. 시지, 중지, 환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44	22	22	24	26	29	32	35	38	42	46
12. 시지, 중지, 환지 및 소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53	26	26	28	30	33	34	37	40	44	48
13. 중지와 환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26	13	13	14	16	18	21	24	27	30	33
14. 중지, 환지, 소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35	17	17	18	20	22	25	28	31	34	37
15. 환지와 소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20	10	10	11	13	15	18	21	24	27	30
16. 무지 또는 기타 수지의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절단의 1/2

III. 대퇴(넓적다리, thigh)

하지장애율 전신장애율

	100%	35/100									
1. 고관절 이단술	100	35	35	37	39	42	45	48	51	55	59
2. 고관절과 슬관절 사이	100	35	35	37	39	42	45	48	51	55	59

IV. 하퇴(종아리, leg)

1. 슬관절 하부	85.7	30	30	32	34	37	40	43	46	50	54
-----------	------	----	----	----	----	----	----	----	----	----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장해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해율	전신 장해율	1	2	3	4	5	6	7	8	9
2. 발	85.7	30	30	32	34	37	40	43	46	50	54
V. 발가락(toes)											
1. 무지	17	6	6	7	8	10	12	14	17	19	22
2. 기타의 지	6	2	2	3	4	5	7	9	11	13	16

관절강직(ankylosis)

잘쓰는 팔 전신장해율
100% 50/100
가. 견갑관절(shoulder)
반대측
90/100

I. 완전강직

A. 견갑골 고정됨

1. 상지 체측위(몸에 댄 상태)	80.5	40.25	40	43	47	51	55	60	64	68	73
2. 상지 외전 60°, 굴곡 10°에서	51	25.5	25	28	31	34	37	41	44	47	51
3. 상지 외전 80~90°에서	86.5	43.25	43	46	50	55	59	63	67	71	76

B. 견갑골 정상(free)

1. 상지 체측위(몸에 댄 상태)	58	29	29	32	35	38	41	45	48	51	55
2. 상지 외전 60°, 굴곡 10°에서	32	16	16	18	21	24	27	31	34	37	41
3. 상지 외전 80~90°에서	50	25	25	28	31	34	37	41	45	48	52

II. 골절, 탈구, 관절염, 활액낭염 및 골형상에 의한 가동성 제한에 기인된 부전강직

A. 견갑골 정상(능동, 무통의 운동범위)

1. 외전 및 회전 불능, 25°신전 및 굴곡	45	23	23	24	27	30	33	37	40	43	47
2. 25° 외전 및 회전, 50°굴곡 및 신전	33	17	17	19	22	25	28	32	35	38	42
3. 50°외전 및 회전, 75°굴곡 및 신전	25	13	13	15	17	20	23	27	30	33	37
4. 90°외전 및 회전, 굴곡 및 신전 정상	17	8.5	8	10	12	15	18	21	24	27	31

B. 견갑골 고정(무통 운동범위)

1. 외전 및 회전 불능, 25°굴곡 및 신전	57	28	28	31	34	37	40	44	47	51	55
2. 25°외전 및 회전, 50°굴곡 및 신전	42	21	21	24	27	30	34	37	40	43	47
3. 50°외전 및 회전, 75°굴곡 및 신전	32	16	16	18	21	24	27	31	34	37	41
4. 90°외전 및 회전	21	10	10	12	15	18	21	25	28	31	35

III. 습관성 탈구

A. 수술하지 않은 경우	36	18	18	21	24	27	30	34	37	40	44
B. 수술한 경우	18	9	9	11	14	17	20	24	27	30	34

IV. 도리깨 같은 견갑관절(손은 정상)

	82	41	41	44	47	51	55	60	64	68	73
--	----	----	----	----	----	----	----	----	----	----	----

나. 주관절(팔굽관절, elbow)

I. 완전강직

A. 완전 신전위	56	28	28	31	34	37	41	44	47	51	55
-----------	----	----	----	----	----	----	----	----	----	----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B. 135°각위	46	23	23	25	28	31	34	38	41	44	48
C. 90°각위	35	17	17	20	23	25	28	31	34	37	41
D. 75°각위	44	22	22	24	27	30	33	36	39	42	46

II. 부분강직

운동범위가 다음으로 제한된 경우

A. 180°위에서 135°굴곡까지	41	21	21	23	25	28	31	34	37	40	44
B. 180°위에서 110°굴곡까지	31	15	15	17	19	22	25	28	31	34	38
C. 180°위에서 90°굴곡까지	17	8	8	10	12	15	18	21	24	27	31
D. 180°위에서 75°굴곡까지	7	4	4	5	7	10	13	16	18	21	25
E. 160°위에서 110°굴곡까지	36	18	18	20	22	25	28	31	34	37	41
F. 160°위에서 90°굴곡까지	22	11	11	13	15	18	21	24	27	30	34
G. 135°위에서 90°굴곡까지	25	12	12	14	16	19	22	25	28	32	36
H. 135°위에서 75°굴곡까지	16	8	8	10	12	15	18	22	25	28	31
I. 110°위에서 90°굴곡까지	28	14	14	16	18	21	24	27	30	33	37
J. 110°위에서 75°굴곡까지	26	13	13	15	17	20	23	26	29	32	36
K. 90°위에서 75°굴곡까지	30	15	15	17	19	22	25	28	31	34	38
L. 90°위에서 45°굴곡까지	28	14	14	16	18	21	24	27	30	33	37

다. 수관절(손목관절, wrist)

I. 완전강직(회전운동은 제외)

A. 70°배굴위	27	11	11	13	15	18	21	25	28	31	35
B. 30°배굴위	16	7	7	8	10	13	16	20	23	26	30
C. 180°위	21	9	9	10	12	15	18	22	25	28	32
D. 15°장축 굴곡위	33	13	14	16	18	21	24	27	30	33	37

II. 회전강직

A. 완전 회외위	14	6	6	7	9	12	15	19	22	25	29
B. 반 회외위	6	2.4	2	3	4	6	8	10	12	14	17
C. 완전 회내위	11	5	5	6	8	11	14	18	21	24	28
D. 반 회외위	5	2	2	3	4	6	8	10	12	14	17

III. 부분강직

운동범위가 다음으로 제한된 경우

A. 45°배굴위에서											
1. 180°선 까지	16	7	7	8	10	13	16	20	23	26	30
2. 15°장축 굴곡까지	8	4	4	5	7	10	13	17	20	23	27
B. 70°배굴위에서											
1. 180°선 까지	12	5	5	6	8	11	14	18	21	24	28
2. 15°장축 굴곡까지	4	2	2	3	4	5	7	9	11	13	17
C. 180°선에서											
1. 15°장축 굴곡위까지	18	7	7	8	10	13	16	20	23	26	30
2. 30°장축 굴곡위까지	14	6	6	7	11	14	17	21	23	26	30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D. 15°내전위에서											
1. 180°선 까지	6	3	3	4	6	9	12	16	19	22	26
2. 15°외전위까지	2	1	1	1	2	3	5	7	9	11	14
E. 10°외전위에서											
1. 180°선까지	5	2	2	3	4	5	7	9	11	13	17
F. 완전 회외위에서											
1. 25°회내위까지	9	4	4	5	7	10	13	17	20	23	27
2. 50°회내위까지	3	1	1	1	2	3	4	5	7	9	11
G. 완전 회내위에서											
1. 25°회외위까지	9	4	4	5	7	10	13	17	20	23	27
2. 50°회외위까지	3	1	1	1	2	3	4	5	7	9	11

라. 무지(제1지, thumb)

잘쓰는 손 전신장애율
 100% 무지 12/100, 시지 7/100, 중지 6/100, 환지 4/100, 소지 3/100
 반대측
 90/100

I. 완전강직

1. 수근수당관절(손목 손가락뼈 관절)											
a. 중위외전과 완전신전위	32	4	4	5	6	7	9	11	13	15	17
b. 중위외전과 예형굴곡위	24	3	3	4	5	6	8	10	12	14	16
c. 완전외전과 완전신전위	58	7	7	9	11	13	15	17	19	21	24
d. 완전외전과 예형굴곡위	54	7	7	9	11	13	15	17	19	21	24
2. 수당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a. 중간위	24	3	3	4	5	6	8	10	12	14	16
b. 완전굴곡위	43	5	5	6	7	8	10	12	14	16	18
3. 지간관절(손가락뼈 관절)											
a. 중간위	15	2	2	3	4	5	7	9	11	13	15
b. 완전신전위	19	3	3	4	5	6	8	10	12	14	16
4. 지간 및 수당수지 양 관절											
a. 중간위	34	4	4	5	6	7	9	11	13	15	17
b. 완전신전위	46	6	6	8	10	12	14	16	18	20	23
5. 수근수당 및 수당수지 양 관절											
a. 중위외전과 중위신전	42	5	5	6	7	8	10	12	14	16	18
b. 완전내전과 완전신전	69	8	8	10	12	14	16	18	20	22	25
6. 모든 관절											
a. 완전신전과 외전	76	9	9	11	13	15	17	19	21	23	26
b. 완전굴곡과 내전	94	11	11	13	15	17	20	23	26	30	34

II. 75% 강직

1. 수당수근관절(손목 손가락뼈의 관절)											
a. 외전·굴곡(신전은 정상)	26	3	3	4	5	6	8	10	12	14	16
b. 내전·굴곡(신전은 정상)	45	6	6	8	10	12	14	16	18	20	23
c. 신전과 내전	31	4	4	5	6	7	9	11	13	15	17
d. 굴곡과 외전	21	3	3	4	5	6	8	10	12	14	16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2. 수당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의 관절)											
a. 신전	20	3	3	4	5	6	8	10	12	14	16
b. 굴곡	37	5	5	6	7	8	10	12	14	16	18
3. 지간관절(손가락뼈관절)											
a. 신전	11	1	1	1	2	2	3	4	5	7	9
b. 굴곡	6	1	1	1	2	2	3	4	5	7	9
4. 지간 및 수당수지 양관절											
a. 신전	24	3	3	4	5	6	8	10	12	14	16
b. 굴곡	38	5	5	6	7	8	10	12	14	16	18
5. 수근수당 및 수당수지 양관절											
a. 신전 및 내전	57	7	7	9	11	13	15	17	19	21	24
b. 굴곡·외전(내전운동은 정상)	37	4	4	5	6	7	9	11	13	15	17
6. 모든 관절											
a. 신전 및 내전	52	6	6	8	10	12	14	16	18	20	23
b. 굴곡 및 내전	69	8	8	10	12	14	16	18	20	22	25
III. 무지 전체의 운동범위 제한											
1. 신전 및 외전 정상에서											
a. 굴곡 및 내전 25°로 제한	52	6	6	8	10	12	14	16	18	20	23
b. 굴곡 및 내전 50°로 제한	34	4	4	5	6	8	10	12	14	16	19
c. 굴곡 및 내전 75°로 제한	18	2	2	3	4	6	7	9	11	13	15
2. 굴곡 및 내전 정상에서											
a. 신전 및 외전 25°로 제한	69	8	8	10	12	14	16	18	20	22	25
b. 신전 및 외전 50°로 제한	38	5	5	6	7	8	10	12	14	16	18
c. 신전 및 외전 75°로 제한	22	3	3	4	5	6	8	10	12	14	16
IV. 수근수당관절(손목 손바닥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1. 굴곡 및 신전 정상, 완전 외전에서											
a. 25°내전까지	26	3	3	4	5	6	8	10	12	14	16
b. 50°내전까지	13	2	2	3	4	6	7	9	11	13	15
c. 75°내전까지	8	1	1	1	2	2	3	4	5	7	9
2. 굴곡 및 신전 정상, 완전 내전에서											
a. 25°외전까지	45	6	6	8	10	12	14	16	18	20	23
b. 50°외전까지	19	2	2	3	4	6	7	9	11	13	15
c. 75°외전까지	13	2	2	3	4	6	7	9	11	13	15
3. 완전 굴곡 및 외전에서											
a. 25°신전 및 내전까지	31	4	4	5	6	7	9	11	13	15	17
b. 50°신전 및 내전까지	15	2	2	3	4	6	7	9	11	13	15
c. 75°신전 및 내전까지	11	1	1	1	2	2	3	4	5	7	9
4. 완전 신전 및 내전에서											
a. 25°굴곡 및 외전까지	21	3	3	4	5	6	8	10	12	14	16
b. 50°굴곡 및 외전까지	11	1	1	1	2	2	3	4	5	7	9
c. 75°굴곡 및 외전까지	6	1	1	1	2	2	3	4	5	7	9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V. 수당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운동범위 제한

1. 완전 굴곡에서												
a. 25°신전까지	37	5	5	6	7	8	10	12	14	16	18	
b. 50°신전까지	28	3	3	4	5	6	8	10	12	14	16	
c. 75°신전까지	14	2	2	3	4	5	6	8	9	11	12	
2. 완전 신전에서												
a. 25°굴곡까지	20	3	3	4	5	6	8	10	12	14	16	
b. 50°굴곡까지	13	2	2	3	4	5	7	9	11	13	15	
c. 75°굴곡까지	8	1	1	1	2	2	3	4	5	7	9	

VI. 지간관절(손가락뼈 사이 관절) 운동범위 제한

1. 완전 굴곡에서												
a. 25°신전까지	6	1	1	1	2	2	3	4	5	7	9	
b. 50°신전까지	5	1	1	1	2	2	3	4	5	7	9	
c. 75°신전까지	4	1	1	1	2	2	3	4	5	7	9	
2. 완전 신전에서												
a. 25°굴곡까지	11	1	1	2	2	3	3	4	5	7	9	
b. 50°굴곡까지	9	1	1	2	2	3	3	4	5	7	9	
c. 75°굴곡까지	6	1	1	2	2	3	3	4	5	6	7	

VII. 여타장애

1. 장측 무감각증												
a. 완전 무감각	25	1.84	2	3	5	7	8	9	10	11	12	
b. 감각둔마(감각저하)	10	1.20	2	3	4	5	6	7	8	9	10	
2. 피하지방수질의 압좌	15	1.80	2	3	5	7	8	9	10	11	12	
3. 심유착 반환	15	1.80	2	3	5	7	8	9	10	11	12	

마. 수지(무지 제외)

시지의 전신장애율

I. 전강직

7/100

A. 수장수지관절												
1. 중간위	45	5	5	6	7	9	11	13	16	19	23	
2. 완전 신전위	75	5	5	6	7	9	11	14	17	20	24	
B. 중위지관절(손가락뼈 중간마디 관절)												
1. 중간위	35	2	2	3	4	6	7	9	11	14	17	
2. 완전 신전위	75	4	4	5	6	8	10	13	16	19	23	
C. 원위지관절(손가락뼈 끝마디 관절)												
1. 중간위	25	1	1	2	3	4	5	6	8	10	13	
2. 완전 신전위	35	1	1	2	3	4	5	6	8	10	13	
D. 중위지 및 원위지관절												
1. 중간위	50	2	2	3	4	6	7	9	11	14	17	
2. 완전 신전위	68	5	5	6	7	10	12	14	17	20	23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E. 수당수지, 중위지, 원위지관절 모두											
1. 중간위	95	7	7	8	10	12	14	18	21	25	29
2. 완전 신전위	100	7	7	8	10	12	14	18	21	25	29
II. 다음 위에서 75% 강직											
1. 수당수지관절의 굴곡	52	4	4	5	6	8	10	13	16	19	23
2. 수당수지관절의 신전	56	4	4	5	6	8	10	13	16	19	23
3. 중위지관절의 굴곡	12	1	1	2	3	4	5	6	8	10	13
4. 중위지관절의 신전	45	3	3	4	5	7	9	12	15	18	22
5. 원위지관절의 굴곡	9	1	1	2	3	4	5	6	8	10	13
6. 원위지관절의 신전	12	1	1	2	3	4	5	6	8	10	13
7. 원위지, 중위지, 수당수지관절의 굴곡	81	6	6	7	8	10	12	15	18	21	24
8. 원위지, 중위지, 수당수지관절의 신전	93	7	7	8	10	12	14	18	21	25	29
9. 원위지 및 중위지관절의 굴곡	17	1	1	2	3	4	5	6	8	10	13
10. 원위지 및 중위지관절의 신전	60	4	4	5	6	8	10	13	16	19	23
III. 1개 수지 전체의 운동범위 제한이											
A. 완전 굴곡에서											
1. 25°신전까지	81	6	6	7	8	10	12	16	18	21	24
2. 50°신전까지	17	1	1	2	3	4	5	6	8	10	13
3. 75°신전까지	11	1	1	2	3	4	5	6	8	10	13
B. 완전 신전에서											
1. 25°굴곡까지	93	7	7	8	10	12	14	17	21	25	29
2. 50°굴곡까지	46	3	3	4	5	7	9	12	15	18	22
3. 75°굴곡까지	32	2	2	3	4	6	7	9	11	14	17
IV. 수장수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A. 완전 굴곡에서											
1. 25°신전까지	52	4	4	5	6	8	10	13	16	19	23
2. 50°신전까지	20	1	1	2	3	4	5	6	8	10	13
3. 75°신전까지	10	0.42	1	1	2	3	3	4	4	5	6
B. 완전 신전에서											
1. 25°굴곡까지	56	4	4	5	6	8	10	13	16	19	23
2. 50°굴곡까지	25	1	1	2	3	4	5	6	8	10	13
3. 75°굴곡까지	15	1	1	1	1	2	2	3	4	5	6
V. 중위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A. 완전 굴곡에서											
1. 25°신전까지	25	1	1	2	3	4	5	6	8	10	13
2. 50°신전까지	20	1	1	2	3	4	5	6	8	10	13
3. 75°신전까지	15	1	1	1	1	2	2	3	4	5	6
B. 완전 신전에서											
1. 25°굴곡까지	45	3	3	4	5	7	9	12	15	18	22
2. 50°굴곡까지	22	2	2	3	4	6	7	9	11	14	17
3. 75°굴곡까지	12	1	1	2	3	4	5	6	8	10	13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VI. 원위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A. 완전 굴곡에서												
1. 25°신전까지	15	0.56	0	1	2	3	3	4	5	6	7	
2. 50°신전까지	10	0.35	0	1	2	2	2	3	4	5	6	
3. 75°신전까지	5	0.10	0	0	1	1	1	2	3	3	4	
B. 완전 신전에서												
1. 25°굴곡까지	20	1	1	2	3	4	5	6	8	10	13	
2. 50°굴곡까지	10	0.21	0	1	2	2	2	3	4	5	6	
3. 75°굴곡까지	5	0.14	0	0	1	1	2	3	3	4	5	

VII. 여타장애

1. 장측 무감각증												
a. 완전 무감각												
	25	1.85	2	3	5	7	8	9	10	11	12	
b. 감각둔마(감각저하)												
	10	0.7	1	2	3	4	5	6	7	8	9	
2. 피하지방수질압좌												
	15	1.05	1	2	3	4	5	6	7	8	9	
3. 심유착반흔												
	15	1.05	1	2	3	4	5	6	7	8	9	

바. 고관절(엉덩이 관절, hip)

하지전체 100, 하지의 전신비율 35/100

I. 전강직(단축 또는 연장 포함)

1. 25°굴곡위	37	13	13	15	18	21	24	27	31	35	39	
2. 70°굴곡위	81	28	28	31	35	39	43	47	51	55	59	
3. 180° 수평의 완전 신전위	47	17	17	20	23	27	31	35	39	43	47	
4. 25°외전의 완전 신전위	43	15	15	17	20	23	27	31	35	39	43	
5. 25°내전의 완전 신전위	51	18	18	21	24	28	32	36	40	44	48	
6. 25°외전의 25°굴곡위	31	11	11	13	15	18	22	26	30	34	38	
7. 25°외전의 70°굴곡위	83	29	29	32	36	40	44	48	52	56	60	
8. 25°내전의 25°굴곡위	38	13	13	15	18	21	24	27	31	35	39	
9. 25°내전의 70°굴곡위	88	31	31	34	37	41	45	49	53	57	61	

II. 부전강직

A. 굴곡과 신전(고관절의 운동범위)												
1. 90°굴곡에서 180°선까지 제한된 것	7	3	3	4	5	7	9	12	15	18	22	
2. 45°굴곡에서 180°선까지 제한된 것	17	6	6	7	8	10	12	15	18	21	25	
3. 25°굴곡에서 180°선까지 제한된 것	27	10	10	12	14	17	21	25	29	33	37	
B. 외전과 내전(굴곡과 신전 제외한 고관절의 운동범위)												
1. 25°외전에서 15°내전인 것	5	2	2	2	3	5	7	10	13	15	19	
2. 25°외전에서 180°선까지인 것	9	3	3	4	5	7	9	12	15	18	22	
3. 25°내전에서 15°외전까지인 것	19	7	7	8	9	11	13	16	19	22	26	
C. 회전(굴곡과 신전 제외한 고관절의 운동범위)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1. 15°내회전에서 180°선까지인 것	12	4	4	5	6	8	10	13	16	19	23
2. 15°내회전에서 25°외회전까지인 것	7	3	3	4	5	7	9	12	15	18	22
3. 180°선에서 20°외회전까지인 것	7	3	3	4	5	7	9	12	15	18	22
4. 180°선에서 30°외회전까지인 것	5	2	2	2	3	5	7	10	13	15	19
D. 무통의 인공관절 치환	30	12	12	12	13	13	14	15	16	17	19
E. 불유합 무혈성괴사(관절재건술 시행치않은 경우)	100	35	35	36	37	38	39	40	42	43	45

사. 슬관절(무릎관절, knee)

전신 장애율 35/100

I. 전강직

1. 완전 신전위	46	16	16	19	22	26	30	34	38	42	46
2. 160°각위	38	16	16	19	22	26	30	34	38	42	46
3. 90°각위	92	32	32	35	38	42	46	50	54	58	62

II. 부전강직(제한된 운동의 범위)

1. 180°선에서 45°까지 굴곡	32	11	11	12	14	17	21	25	29	33	37
2. 180°선에서 90°까지 굴곡	16	5	6	7	8	10	12	15	18	21	25
3. 180°선에서 110°까지 굴곡	6	2	2	3	4	5	7	10	13	15	19
4. 160°선에서 90°까지 굴곡	38	13	13	15	18	21	24	27	31	35	39
5. 160°선에서 45°까지 굴곡	33	11	11	13	15	18	22	26	30	34	38

III. 반월상연골 파열

1. 간혈성 용수절 관절현상(수술하지 않은 경우)	18	6	6	7	8	10	12	15	18	21	25
2. 연골 절제하여 기능 충분히 회복한 경우	10	2	2	3	4	5	6	7	8	9	10

IV. 십자인대 파열

1. 이완관절(수술하지 않은 경우)	40	14	14	16	19	22	25	29	32	36	40
2. 수술한 경우 : 강직함을 참조											

V. 사두건근(4갈래근) 파열

1. 신전운동 75% 약해짐	45	15	15	16	17	19	21	22	25	27	30
-----------------	----	----	----	----	----	----	----	----	----	----	----

VI. 슬개골(무릎골) 파열

1. 보존적 치료 : 강직 있는 경우	20	7	8	9	10	11	12	13	14	15	16
2. 적출한 경우 : 강직 있는 경우	20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아. 족관절(발목관절, ankle)

I. 전강직

1. 90°각위	41	12	12	14	17	19	23	26	30	34	38
----------	----	----	----	----	----	----	----	----	----	----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2. 125°각위	61	18	18	21	24	28	32	36	40	44	48
II. 부전강직(굴곡과 신전의 운동제한 범위)											
1. 90°각에서											
a. 105° 저축 굴곡까지	30	9	9	11	13	15	19	23	27	31	35
b. 125° 저축 굴곡까지	15	5	5	5	6	8	10	14	17	20	24
2. 105°각에서											
a. 125° 저축 굴곡까지	28	9	9	11	13	15	19	23	27	31	35
3. 115°각에서											
a. 135° 저축 굴곡까지	60	18	18	21	24	28	32	36	40	44	48
III. 내전과 외전(제한된 운동의 범위)											
1. 20°내반 및 내전에서											
a. 180°선까지	9	3	3	4	5	7	9	12	15	18	22
b. 10°외반 및 외전까지	5	2	2	3	4	5	7	10	13	15	19
2. 중심선에서											
a. 10°외반 및 외전까지	10	3	3	4	5	7	9	12	15	18	22
IV. 외반위 고정변형											
1. 10°	15	5	5	6	7	8	10	14	17	20	24
2. 20°	19	6	6	7	8	9	11	13	15	17	20
V. 내반위 고정변형											
1. 10°	11	4	4	5	6	7	10	13	16	19	23
2. 20°	15	5	5	6	7	8	10	14	17	20	24
3. 30°	24	7	7	8	9	11	13	16	19	22	26

자. 지(발가락, toe)

전신장애율 무지 6/100, 기타지 2/100

I. 전강직

A. 무지(제1지)

a. 근위관절

1. 180°선	35	2	2	2	3	4	6	8	10	12	14
2. 20°배굴	29	2	2	2	3	4	6	8	10	12	14
3. 20°저굴	50	3	3	3	4	5	7	9	11	13	15

b. 원위관절

1. 180°선	8	0.5	0	0	1	1	2	2	4	5	6
2. 20°저굴	17	1	1	1	2	3	4	5	7	8	9

c. 양관절 추상지(hammer toe)

	29	2	2	2	3	4	6	8	10	12	14
--	----	---	---	---	---	---	---	---	----	----	----

B. 기타 지

a. 정상위

	20	0.4	0	0	0	1	1	1	2	3	4
--	----	-----	---	---	---	---	---	---	---	---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b. 추상지(hammer toe)	25	0.5	0	0	1	1	1	2	3	4	5
c. 중첩위	23	0.5	0	0	1	1	1	2	3	4	5
II. 부전강직											
A. 무지(제1지)											
a. 근위관절의 제한된 운동범위											
1. 15°신전에서 180°선까지	11	1	1	1	1	2	3	4	5	6	7
2. 180°선에서 10°굴곡까지	25	2	2	2	3	4	6	8	10	12	14
3. 180°선에서 35°굴곡까지	19	1	1	1	2	3	4	5	7	8	9
b. 원위관절의 제한된 운동범위											
1. 180°선에서 15°굴곡까지	12	1	1	1	2	3	4	5	6	7	
c. 양관절의 제한된 운동범위가											
1. 추상지(hammer toe)에 이른 것	20	1	1	1	2	3	4	5	6	7	8
2. 무지외반증에 이른 것	26	2	2	2	3	4	6	8	10	12	14
B. 기타 지											
1. 추상지(hammer toe)에 이른 것	20	0.5	0	0	1	1	1	2	3	4	5
2. 중첩지에 이른 것	23	0.5	0	0	1	1	1	2	3	4	5
3. 저굴 변형	22	0.5	0	0	1	1	1	2	3	4	5

골 절

상지 100% 전신비율 50/100%

가. 쇄골

I. 곡각 형성 및 염전

1. 15~20° 8 4 4 5 6 7 9 11 13 15 18

II. 과잉가골

1. 순환압박 : 주관적 증상일 뿐일 때 11 6 6 7 8 10 12 14 16 18 21
 2. 순환압박 : 종장을 동반한 경우(부은 경우) 15 8 8 10 12 14 17 20 23 26 30

III. 불유합

1. 90% 경직도 10 5 5 6 7 9 11 13 15 17 20
 2. 50% 경직도 17 8 9 11 13 15 18 21 23 27 31
 3. 10% 경직도 25 13 13 15 17 19 22 25 28 31 34

IV. 골절 또는 흉쇄관절의 탈구 : 이완관절

10 5 5 6 7 9 11 13 15 17 20

V. 골절 또는 흉쇄인대의 파열 : 이완관절

10 5 5 6 7 9 11 13 15 17 20

VI. 외상성 관절염

20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나. 견갑골

I. 경부골절 : 각 형성

1. 10°	8	4	4	5	6	8	10	12	14	16	19
2. 25°	15	8	8	10	12	14	17	20	23	26	30

II. 관절와의 골절 : 강직항 참조

III. 견봉의 골절 : 각 형성

1. 10°	11	6	6	7	8	10	12	14	16	18	21
2. 25°	15	8	8	10	12	14	17	20	23	26	30

IV. 견갑극 골절(심한 변형)

10	5	5	6	7	9	11	13	15	17	20
----	---	---	---	---	---	----	----	----	----	----

V. 견갑체부골절

1. 불유합	16	8	8	10	12	14	17	20	23	26	30
2. 25°각형성	15	8	8	10	12	14	17	20	23	26	30

VI. 오혜인대파열, 상완골 하방전위

16	8	8	10	12	14	17	20	23	26	30
----	---	---	----	----	----	----	----	----	----	----

다. 상완골(humerus)

I. 각 형성 또는 염전

A. 경부

1. 10°	7	4	4	5	6	7	9	11	13	15	18
2. 20°	13	7	7	8	9	11	13	15	17	19	22
3. 45°	28	14	14	16	18	21	24	27	30	33	37

B. 간부(중1/3부)

1. 10°	6	3	3	4	5	6	8	10	12	14	17
2. 20°	13	7	7	8	9	11	13	15	17	19	22
3. 45°	37	19	19	21	24	27	30	33	36	39	43

C. 하단부

1. 10°	11	6	6	7	8	10	12	14	16	18	21
2. 20°	21	10	10	12	14	16	19	22	25	28	32
3. 45°	42	21	21	23	26	29	32	35	38	41	45

D. 과부(관절용기 ; 정복 안된 상태)

10	5	5	6	7	9	11	13	15	17	20
----	---	---	---	---	---	----	----	----	----	----

II. 단축

A. 경부

1. 1/2inch	5	3	3	4	5	6	8	10	12	14	17
2. 1inch	10	5	5	6	7	9	11	13	15	17	20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B. 간부(중1/3부)											
1. 1/2inch	4	2	2	2	3	4	6	8	10	12	14
2. 1inch	11	6	6	7	8	10	12	14	16	18	21
3. 2inch	22	11	11	13	15	17	20	23	26	29	33
C. 하단부											
1. 1/2inch	9	5	5	6	7	9	11	13	15	17	20
2. 1inch	16	8	8	9	11	14	17	20	23	26	30
3. 2inch	28	14	14	16	18	21	24	27	30	33	37

III. 과잉가골 ----- 강직·마비 부분 참조

IV. 불유합

1. 75% 경직도	46	24	24	26	29	32	36	40	44	48	52
2. 50% 경직도	67	34	34	37	40	43	47	51	56	60	64
3. 10% 경직도	87	44	44	47	50	53	57	61	66	70	74

라. 전박부-수부(아래팔, forearm-hand)

손100% 전신장애율 40/100%

I. 각 형성 또는 염전

1. 주두(팔굽치머리)

a. 취약유합 ; 섬유성	19.0	7.6	8	9	11	14	17	20	23	26	30
b. 불유합 ; 경직도 없음	47.5	19.0	19	22	25	28	31	35	39	43	48

2. 요골골두 절제	20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	---	---	----	----	----	----	----	----	----	----

3. 오혜부 ----- 주관절의 강직부분 참조

4. 요골 간부의 20° 각 형성

a. 상1/3부	16	8	7	8	10	11	13	15	17	19	22
b. 중1/3부	11	5	5	5	6	7	9	11	13	15	18
c. 하1/3부	16	8	7	8	10	11	13	15	17	19	22

5. 척골 간부의 20° 각 형성

a. 상1/3부	21	9	9	10	12	15	18	21	24	27	31
b. 중1/3부	16	7	7	7	8	9	11	13	15	17	20
c. 하1/3부	6	3	3	3	4	5	6	8	10	12	15

6. 요골 및 척골의 10° 각 형성

a. 상1/3부	21	9	9	10	12	15	18	21	24	27	31
b. 중1/3부	16	7	7	8	10	11	13	15	17	19	22
c. 하1/3부	16	7	7	8	10	11	13	15	17	19	22

7. 요골 및 척골의 20° 각 형성

a. 상1/3부	26	11	11	13	15	17	20	23	26	29	33
b. 중1/3부	21	9	9	10	12	15	18	21	24	27	31
c. 하1/3부	21	9	9	10	12	15	18	21	24	27	31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II. 단축

1. 요골 척골 중 한쪽뼈의 단축 ----- 간부의 각 형성 부분 참조												
2. 두뼈 1 inch 단축	10	4	4	5	6	7	9	11	13	15	18	
2. 두뼈 2 inch 단축	21	8	9	10	12	15	18	21	24	27	31	

III. 간부의 불유합

1. 90% 경직도												
a. 요골	20	8	8	9	11	14	17	20	23	26	30	
b. 척골	25	10	10	12	14	16	19	22	25	28	32	
c. 두뼈	30	12	기재 없음									
2. 50% 경직도												
a. 요골	27	11	11	13	15	17	20	23	26	29	33	
b. 척골	37	15	15	17	19	21	24	28	32	36	40	
c. 두뼈	42	17	17	19	21	23	26	30	34	38	42	
3. 10% 경직도												
a. 요골	65	26	26	29	32	35	39	43	47	51	56	
b. 척골	71	28	28	31	34	37	41	45	49	53	58	
c. 두뼈	73	29	29	32	35	38	42	46	50	54	59	

마. 수관절-수부(wrist-hand, 수근골)

I. 주상골 골절 ; 골편전위

a. 불량유합	13	5	5	5	6	7	9	11	13	15	18	
b. 불유합	21	8	9	11	13	15	18	21	23	27	31	

II. 반월상골 골절

a. 불량유합	7	2.8	3	4	5	6	8	10	12	14	16	
b. 탈구 ; 정복 안된 상태	50		수관절의 강직 참조									
c. 조기의 도수정복	20		수관절의 강직 참조									
d. 조기의 관혈정복	20		수관절의 강직 참조									
e. 적출술 시행	25		수관절의 강직 참조									
f. 주상골 골절이 동반된 탈구												
1. 정복 안된 상태	30		수관절의 강직 참조									
2. 정복 시행되고 주상골 적출한 상태	35		수관절의 강직 참조									

III. 기타 수근골 골절

	5	2	2	2	3	4	6	8	10	12	14	
--	---	---	---	---	---	---	---	---	----	----	----	--

IV. 제1중수골 이외의 중수골(손바닥뼈)

a. 10° 각 형성	8	3	4	4	5	6	8	10	12	13	16	
-------------	---	---	---	---	---	---	---	----	----	----	----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b. 20° 각 형성	12	5	5	5	6	7	9	11	13	15	18
V. 제1중수골(손바닥뼈)											
a. 두부에 10° 각 형성	8	3	4	4	5	6	8	10	12	14	16
b. 간부에 10°각 형성	12	5	5	5	6	7	9	11	13	15	18
c. 기부에 10°각 형성	14	5	6	7	8	9	11	13	15	17	19

바. 수지(손가락, fingers)

I. 강직을 제외한 손가락의 골절

A. 근위지절

1. 기부

a. 10°각 형성	10		0	1	2	3	3	4	5	6	7
b. 20°각 형성	16	1	1	2	3	4	5	6	8	10	13

2. 간부

a. 10°각 형성	5	0.39	0	0	1	1	1	2	3	3	4
b. 20°각 형성	10	0.70	0	1	2	3	3	4	5	6	7

3. 경부

a. 10°각 형성	10	0.70	0	1	2	3	3	4	5	6	7
b. 20°각 형성	16	1	1	2	3	4	5	6	8	10	13

B. 중위지절

a. 10°각 형성	10	1	0	1	2	3	3	4	5	6	7
b. 20°각 형성	13	1	1	2	3	4	5	6	8	10	13

c. 원위지절

a. 압좌변형	7	1	0	0	1	1	1	2	3	3	4
b. 분절 또는 변형호	2	1	0	0	0	0	0	0	0	0	0

사. 골반골절(pelvis fractures)

전신장애율 100%

I. 전위성 골절

1. 편측지	2	2	2	3	4	5	7	9	11	13
2. 양측지	6	6	7	8	9	11	13	15	17	19
3. 장골익	2	2	2	3	4	5	7	9	11	13
4. 무명골 전체가 linch 전위	16	17	19	21	24	27	30	33	36	39
5. 치골 결합부 전위	11	12	14	16	18	20	23	26	29	32

II. 관절부 골절

1. 비구 ----- 고관절의 강직 부분 참조										
2. 천장관절	16	17	19	21	24	27	30	33	36	39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아. 대퇴골 골절(fractures of the femur) 하지 100%, 전신장애율 35/100

I.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각 형성(강직은 제외)

1. 대퇴골 경부												
a. 10°내전 변형	5	2	2	2	3	4	5	6	7	9	11	
b. 25°내전 변형	11	4	4	5	6	8	10	12	15	18	21	
c. 10°외전 변형	11	4	4	5	6	8	10	12	15	18	21	
d. 25°외전 변형	16	6	6	7	8	10	12	14	17	20	23	
e. 25°외반 변형	9	3	3	3	4	5	6	7	8	10	12	
f. 25°내반 변형	4	2	2	2	3	4	5	6	7	9	11	
g. 15°굴곡 변형	7	2	2	2	3	4	5	6	7	9	11	
h. 25°굴곡 변형	12	4	4	5	6	8	10	12	15	18	21	
2. 대퇴골 간부												
a. 10°각 형성	13	5	5	6	7	9	11	13	16	19	22	
b. 25°각 형성	18	6	6	7	8	10	12	14	17	20	23	
c. 45°각 형성	33	12	12	14	16	18	20	23	26	29	32	
3. 대퇴골 과부												
a. 10° X각	16	6	6	7	8	10	12	14	17	20	23	
b. 25° X각	22	8	8	9	10	12	14	16	19	22	25	
c. 10° O각	9	3	3	3	4	5	6	7	8	10	12	
d. 25° O각	15	5	5	6	7	9	11	13	16	19	22	
e. 15°굴곡 변형	19	7	7	8	9	11	13	15	18	21	24	
f. 15°과신전 변형	26	9	9	10	11	13	15	17	20	23	26	

II. 단축

a. 1/2 inch	4	1	1	1	2	2	3	4	5	6	8	
b. 1 inch	10	4	4	5	6	8	10	12	15	18	21	
c. 3/2 inch	14	5	5	6	7	9	11	13	16	19	22	
d. 2 inch	22	8	8	9	10	12	14	16	19	22	25	
e. 3 inch	42	15	15	17	19	22	25	28	31	34	38	

III. 불유합

1. 대퇴골 경부												
a. 75% 안정도	55	19	20	23	27	31	36	41	44	47	52	
b. 50% 안정도	63	22	22	25	29	33	38	43	46	49	54	
c. 10% 안정도	88	31	31	34	38	42	47	52	55	58	63	
2. 대퇴골 간부												
a. 75% 안정도	64	23	23	26	28	32	37	42	45	48	53	
b. 50% 안정도	91	32	32	35	39	43	48	53	56	59	64	
c. 10% 안정도	95	33	33	36	38	44	49	54	57	60	65	

IV. 과잉가골 ----- 강직·마비 부분 참조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자. 경골과 비골의 골절(fractures of tibia and fibula) 족 100%, 전신비율 30/100

1. 각 형성 또는 염전(강직은 제외하고 단축은 포함함)

1. 상1/3부

a. 10~15° X각	16	5	5	6	7	9	11	13	15	17	19
b. 10~15° O각	10	3	3	4	5	6	8	10	12	14	16
c. 10~15° 후방 만곡	26	8	8	10	12	14	16	18	20	22	25
d. 10~15° 전방 만곡	14	4	4	5	6	7	9	11	13	14	16
e. 20~30° X각	22	7	7	9	11	13	15	17	19	21	24
f. 20~30° O각	16	5	5	6	7	9	11	13	15	17	19
g. 20~30° 후방 만곡	34	10	10	12	14	16	18	20	22	24	26
h. 10~15° 전방 만곡	19	6	6	8	10	12	14	16	18	20	23

2. 간부

a. 10~15° 전향 만곡	6	2	2	3	4	5	7	9	11	13	15
b. 10~15° 후향 만곡	13	4	4	5	6	7	9	11	13	14	16
c. 10~15° 외향 만곡	8	3	3	4	5	6	8	10	12	14	16
d. 10~15° 내향 만곡	14	4	4	5	6	7	9	11	13	14	16
e. 20~30° 전향 만곡	13	4	4	5	6	7	9	11	13	14	16
f. 20~30° 후향 만곡	25	8	8	10	12	14	16	18	20	22	25
g. 20~30° 외향 만곡	15	5	5	6	7	9	11	13	15	17	19
h. 20~30° 내향 만곡	23	7	7	9	11	13	15	17	19	21	24

3. 하단부

a. 10~15° 내반	10	3	3	4	5	6	8	10	12	14	16
b. 10~15° 외반	16	5	5	6	7	9	11	13	15	17	19
c. 10~15° 후방 만곡	12	4	4	5	6	7	9	11	13	14	16
d. 10~15° 전방 만곡	10	3	3	4	5	6	8	10	12	14	16
e. 20~30° 내반	16	5	5	6	7	8	9	10	11	12	13
f. 20~30° 외반	28	8	8	10	12	14	16	18	20	22	25
g. 20~30° 후방 만곡	20	6	6	8	10	12	14	16	18	20	23
h. 20~30° 전방 만곡	16	5	5	6	7	9	11	13	15	17	19

II. 단축

a. 1 inch	4	1	1	1	2	3	4	5	6	7	9
b. 3/2 inch	10	3	3	3	4	5	6	7	8	9	11
c. 2 inch	22	7	7	9	11	13	15	17	19	21	24
d. 3 inch	42	13	13	15	17	19	22	25	27	29	34

III. 불유합

1. 간부

a. 75% 경직도	30	9	9	11	13	15	17	19	21	23	16
------------	----	---	---	----	----	----	----	----	----	----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b. 50% 경직도	42	13	13	15	17	19	22	25	27	29	34
c. 10% 경직도	71	21	21	23	26	29	33	37	40	44	49

IV. 과잉가골

V. 각 형성 합병(강직 제외)

1. 무릎관절 내 골절	14	4	4	5	6	7	8	10	12	14	16
2. 발목관절 내 골절	16	4	5	6	7	8	9	11	13	15	17
3. 경비골 유합증	7	2	2	2	3	4	5	6	7	8	10

차. 족부의 골절(fractures of the foot)

발 100%, 전신장애율 30/100%

A. 족근골

1. 종골 골절

a. 불량유합	25	8	8	9	11	13	15	17	19	21	23
b. 양호히 정복된 분쇄골절	20	7	7	8	10	12	14	16	18	20	20
c. 완전 유합된 관절 고정술	18	5.4	6	7	9	11	13	15	17	19	21

2. 거골 골절

a. 불량유합	21	6	6	7	9	11	13	15	17	19	21
b. 전위가 적은 심한 골절	14	4	4	5	6	7	9	11	13	14	16

3. 기타의 족근골의 골절

a. 불량유합	10	3	3	3	4	5	6	7	8	9	11
b. 관절 고정술	9	2	3	3	4	5	6	7	8	9	11

B. 중족골

a. 돌출부에 10°각 형성	3	1	1	1	2	3	4	5	6	7	9
b. 돌출부에 20°각 형성	8	3	3	3	4	5	6	7	8	9	11

C. 족지 ----- 족지의 강직부분 참조

카. 척주손상(spine injuries)

I. 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의 골절

A.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 추체의 골절

a. 경추부	17	17	19	21	24	27	30	33	36	40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17	17	19	21	24	27	30	33	36	40
c. 배요부	20	22	24	26	29	32	33	38	41	45
d. 요추부	19	19	21	23	26	29	32	35	38	42

2. 추간판의 골절

a. 경추부	12	12	14	27	20	23	27	30	33	37
--------	----	----	----	----	----	----	----	----	----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8	8	8	9	10	12	14	17	20	23	27
c. 배요부	16	16	16	18	20	23	26	29	32	35	39
d. 요추부 ; 척추 전방전위증	17	17	17	19	21	24	27	30	33	36	40
3. 횡돌기 또는 자상돌기 골절											
a. 경추부	11	11	11	12	14	15	18	21	24	27	31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12	12	12	14	17	20	23	27	30	33	37
c. 배요부	16	16	16	18	20	23	26	29	32	35	39
d. 요추부	14	14	14	16	18	21	24	27	30	33	37
B.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 추체의 골절											
a. 경추부	26	26	26	28	30	33	36	39	42	45	49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26	26	26	28	30	33	36	39	42	45	49
c. 배요부	35	35	35	37	39	42	45	48	51	54	57
d. 요추부 ; 척추 전방전위증	35	35	35	37	39	42	45	48	51	54	57
2. 추간판의 골절											
a. 경추부	19	19	19	21	23	26	29	32	35	38	42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16	16	16	18	20	23	26	29	32	35	39
c. 배요부	23	23	23	25	28	31	34	37	40	43	46
d. 요추부	24	24	24	26	29	32	35	38	41	44	47
3. 횡돌기 또는 자상돌기의 골절											
a. 경추부	16	16	16	18	20	23	26	29	32	35	39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17	17	17	19	21	24	27	30	33	36	40
c. 배요부	21	21	21	23	25	28	31	34	37	40	44
d. 요추부 ; 척추 전방전위증	19	19	19	21	23	26	29	32	35	38	42
C.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2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 추체의 골절											
a. 경추부	47	47	47	49	51	54	57	60	63	66	70
b. 흉추부(제10흉추부 이상)	45	45	45	47	49	52	55	58	61	64	68
c. 배요부	63	63	63	65	67	70	73	76	79	82	86
d. 요추부 ; 척추 전방전위증	63	63	63	65	67	70	73	76	79	82	86
2. 추간판의 골절											
a. 경추부	33	33	33	35	37	40	43	46	49	52	56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32	32	32	34	36	39	42	45	48	51	55
c. 배요부	43	43	43	45	47	50	53	56	59	62	67
d. 요추부	40	40	40	42	44	47	50	53	56	59	63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3. 횡돌기 또는 자상돌기의 골절

a. 경추부	24	24	26	29	32	35	38	41	44	47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25	25	27	30	33	36	39	42	45	48
c. 배요부	31	31	33	35	38	41	44	47	50	54
d. 요추부 ; 척추 전방전위증	30	30	32	34	37	40	43	46	49	53

II. 척수손상을 동반한 골절 ----- 신경·마비 부분을 참조

III. 척추체간 인대와 근막의 파열을 동반한 좌상 또는 염좌

A.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중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 경추부	8	8	9	10	12	14	17	20	23	27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8	8	9	10	12	14	17	20	23	27	
3. 요추부	13	13	15	18	21	24	26	27	28	29	
4. 요천부	13	13	15	18	21	24	26	27	28	29	
5. 천장부	19	19	21	23	26	29	32	33	34	36	
B.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중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a. 경추부	20	20	21	22	24	25	28	31	34	38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20	20	21	22	24	25	28	31	34	38	
c. 요추부	25	26	27	28	29	30	32	35	38	42	
d. 천장부	25	26	27	28	29	30	32	35	38	42	

IV. 천장 또는 요천증후군(임상적 또는 X선상 명백한 관절손상 또는 관절약화가 확인된 경우)

a. 재발하는 중등도의 발작 ; 고정, 안정 또는 지지로서 완화되는 것	12.0	12	14	17	20	23	27	30	33	37
b. 중증 ; 자세나 신경학적 증상이 명백하여 수술이 불가피한 것 -----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										
c. 수술하지 않은 경우	20.0	20	22	24	27	30	33	36	39	43
d. 수술한 경우 ; 강직이나 취약 등의 후유증을 남긴 것 ----- 운동제한의 항목을 참조										

V.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

A. 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 ; 안정이나 지지로서 완화되는 중등도의 재발성 발작											
	12	12	14	17	20	23	27	30	33	37	
B. 중증 ; 수술이 불가피한 것	20	20	22	24	27	30	33	36	39	43	
C. 수술한 경우 ; 후유증을 남긴 것 ----- 운동제한의 항목을 참조											
D. 수술한 경우											
1. 관절 유합술 이외의 경우											
a. 운동장애성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 후에도 재발이 없는 경우 ; 일상운동 재개											
	0										
b. 무거운 물건 들면 증상 악화되는 6개월 후의 요천부 동통 ; 특별한 중노동을 피해야 하는 것											
	20	20	21	22	23	24	25	27	28	29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c. 6개월 후의 완고한 요천부 동통 ; 전직을 요하는 것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 관절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 6개월 후 x선상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애 증상 없음	10		10	11	12	13	14	15	16	19	19
b. 요추 제4-5 유합술 후 6개월 시점에서 x선상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애 증상 없음	20		20	21	22	23	24	25	26	29	28
c. 요추 제4-5, 천추 제1의 가관절 ; 수술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증상이 경도인 것)	30		30	30	31	32	33	34	35	36	39
d. 요추 제4-5, 천추 제1의 가관절 ; 중증, 간헐적 기능전폐 혹은 가능한 노무가 극히 제한된 것	40		40	40	41	42	43	44	45	46	47
VI. 만성 류머티성 또는 퇴행성 질환:만성 자세긴장증(척추, 근육, 인대 및 인막에 지소성 또는 간헐성 통증 재연되는 것)											
A. 운동 전폐 : 유착성 척추염											
1. 경추부											
a. 정상 직립자세	54.0		54	56	58	61	64	67	70	73	77
b. 예각 형성	60.0		60	62	64	67	70	73	76	79	83
2. 흉추부											
a. 정상 직립자세	56.0		56	58	61	64	67	70	73	76	80
b. 예각 형성	62.0		62	64	67	70	73	76	79	82	86
3. 요추부											
a. 정상 직립자세	66.0		66	68	70	73	76	79	82	85	89
b. 예각 형성	68.0		68	70	72	75	78	81	84	87	91
4. 척추전체											
a. 정상 직립자세	72		72	75	78	81	84	88	92	96	100
b. 예각 형성	82		82	85	88	91	94	97	100	100	100
B. 부전강직 :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중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 경추부	24		24	26	29	32	35	38	41	44	47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25		25	27	30	33	36	39	42	45	48
3. 요추부	33		33	35	37	40	43	46	49	52	56
4. 요천부	29		29	31	33	36	39	42	45	48	52
5. 장요부	29		29	31	33	36	39	42	45	48	52
C.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중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 경추부	33		33	35	37	40	43	46	49	52	56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33		33	35	37	40	43	46	49	52	56
3. 요추부	42		42	45	48	51	54	57	60	63	67
4. 요천부	41		41	44	47	50	53	56	59	62	66
D.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25%까지 중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 경추부	50		50	52	54	57	60	63	66	69	73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47		47	49	51	54	57	60	63	66	70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3. 요추부	65	65	65	67	69	72	75	78	81	84	88
4. 요천부	64	64	64	66	68	71	74	77	80	83	87
5. 장요부	64	64	64	66	68	71	74	77	80	83	87

말초신경

팔 100%(손 80/100), 전신장애율 50/100(40/100)

I. 상지

잡는 손 100%, 잘안잡는 손 90/100

A. 상완신경총

1. 상지부(제5, 6신경근 erb-duchenne 중후군)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48	24	24	27	31	35	39	44	48	52	57
b. 진성 전마비	82	41	41	44	47	51	55	60	64	68	73

2. 중지부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42	21	21	24	27	31	35	40	44	45	49
b. 진성 전마비	76	38	38	41	44	48	52	57	61	65	70

3. 하지부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42	21	21	24	27	31	35	40	44	45	49
b. 진성 전마비	76	38	35	41	44	48	52	56	61	65	70

4. 전지부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56	28	28	31	34	38	42	47	51	55	60
b. 진성 전마비	96	48	48	52	56	60	64	69	73	77	82

B. 상지의 신경

1. 요골신경(근라선상지)

a. 전범위의 마비	86	43	43	46	49	53	57	62	66	70	75
b. 장회외근 상부											

(1) 운동 및 지각의 전마비	30	15	15	18	22	26	30	35	39	43	48
(2) 진성 전마비	86	43	43	46	49	53	57	62	66	70	75

c. 회외근 하부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20	10	10	13	16	19	22	26	29	32	36
(2) 진성 전마비	44	22	22	25	28	32	36	41	45	49	54

2. 정중신경

a. 활차상주근의 상부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24	12	12	14	16	19	22	26	29	32	36
(2) 진성 전마비	64	32	32	35	38	42	46	50	53	56	60

b. 활차상주근의 하부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14	7	7	8	9	11	13	16	18	20	23
(2) 진성 전마비	32	16	16	18	21	24	27	31	34	37	41

3. 척골신경

a. 상지 또는 전박의 상반부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22	11	11	12	14	16	19	23	26	29	33
-------------------	----	----	----	----	----	----	----	----	----	----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2) 진성 전마비	60	30	30	32	35	38	41	45	48	51	55
b. 척골측 수근굴근(손목 굽힘근)하의 전박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16	8	8	9	11	13	16	19	21	23	26
(2) 진성 전마비	46	23	23	26	29	32	35	39	42	45	49
4. 근피신경											
a. 이두근복(상완 두갈래근 복부)의 액화신경(겨드랑신경)											
(1) 운동 및 지각의 전마비	16	8	8	9	11	13	16	19	21	23	26
(2) 진성 전마비	42	21	21	24	27	30	33	37	40	43	47
b. 이두근 하부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10	5	5	6	7	9	11	14	16	18	21
(2) 진성 전마비	22	11	11	12	14	16	19	23	26	29	33
5. 액화신경의 회선지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12	6	6	7	8	10	12	15	18	21	24
(2) 진성 부전마비	28	14	14	16	18	20	24	28	31	34	38
6. 동일 상지의 복합성 신경손상											
a.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 손상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38	19	19	22	25	28	31	35	38	42	45
(2) 진성 부전마비	82	41	41	44	47	51	55	60	64	68	73
b.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과 척골측 수근굴근 및 심지굴근 상부의 척골신경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38	19	19	22	25	28	31	35	38	42	45
(2) 진성 부전마비	82	41	41	44	47	51	55	60	64	68	73
c. 근나선상지와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 및 전박 상반부 위의 척골신경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64	32	32	35	38	42	46	50	53	56	60
(2) 진성 부전마비	92	46	46	50	54	58	62	67	71	75	80
d. 활차상주근 하부의 정중신경과 전박 상반부의 척골신경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42	21	21	24	27	30	33	37	40	43	47
(2) 진성 부전마비	72	36	36	39	42	46	49	53	57	61	65
e. 활차상주근 하부의 정중신경과 척골측 수근굴근 및 심지굴근 하부의 척골신경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38	19	19	22	25	28	31	35	38	42	45
(2) 진성 부전마비	82	41	41	44	47	51	55	60	64	68	73
f. 완요골근 상부의 근나선지와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50	25	25	28	30	36	40	45	49	53	58
(2) 진성 부전마비	92	46	46	50	54	58	62	67	71	75	80
II. 하지			하지 100%, 전신비율 35/100								
A. 좌골신경			발 85.7/100 30/100								
1. 대퇴 상반부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35	12	12	14	16	19	22	26	29	32	36
b. 진성 전마비	58	20	20	23	26	29	32	36	39	42	46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2. 대퇴 하반부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28	10	10	11	12	14	17	21	24	27	31	
b. 진성 전마비	42	15	15	17	20	23	26	30	33	37	41	
B. 외측 슬와지(총비골신경)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21	7	7	8	10	12	14	17	19	21	24	
b. 진성 전마비	38	13	13	15	17	20	23	27	28	33	35	
C. 전경골지(심부비골신경)												
a. 운동 및 지각의 전마비	17	6	6	7	8	10	12	15	18	21	24	
b. 진성 전마비	29	10	10	11	12	14	17	21	24	27	31	
D. 근피지(표재성 비골신경)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8	3	3	3	4	6	7	8	9	11	13	
b. 진성 전마비	14	5	5	6	7	9	11	14	17	18	21	
E. 내측 슬와지(경골신경)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28	10	10	11	12	14	17	21	24	27	31	
b. 진성 전마비	38	13	13	15	17	20	23	27	28	33	35	
F. 비목어(넙치)근 상부의 후경골지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24	8	8	9	11	13	16	19	21	23	26	
b. 진성 전마비	34	12	12	14	16	19	22	26	27	32	33	
G.. 외복재신경	8	3	3	3	4	5	7	10	12	14	17	
H. 비목어(넙치)근 하부의 후경골지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16	6	6	7	8	10	12	15	18	21	24	
b. 진성 전마비	26	9	9	10	11	13	15	20	23	26	30	
I. 내측족저신경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9	3	3	3	4	5	7	10	12	14	17	
b. 진성 전마비	16	6	6	7	8	10	12	15	18	21	24	
J. 외측족저신경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9	3	3	3	4	5	7	10	12	14	17	
b. 진성 전마비	16	6	6	7	8	10	12	15	18	21	24	
K. 하퇴전(前)부신경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28	10	10	11	12	14	17	21	24	27	31	
b. 진성 전마비	64	22	22	25	28	32	36	41	45	49	54	
L. 내복재신경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6	2	2	2	3	4	6	9	11	13	16	
b. 진성 전마비	10	3	4	5	6	8	10	13	16	17	20	
M. 폐쇄신경	8	3	3	3	4	5	7	10	12	14	17	
N. 대퇴의 외측 피신경	4	1	1	2	2	3	5	7	10	12	14	
O. 장골서혜신경	6	2	2	2	3	4	6	9	11	13	16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VIII. 만성 복막염 ; 유착증

A. 내과적 요법으로 완화되는 직접외상이나 수술 후에 속발한 간헐적인 경한 증상의 복통	0										
B. 직접외상이나 수술 후에 속발한 빈번하고 상당히 심한 복통, 오심, 주기적인 내장 장애를 동반하는 심한 복부증상. 1~2일의 휴무가 요함.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C. 회복에 2~3주를 요하는 복통, 오심, 내장장애를 동반하는 심한 복부증상	25	25	26	27	28	30	32	34	37	40	
D. X선 소견상 현저한 폐색상이 분명하고 재개복술을 요하거나 복부수술 후 속발한 장기간의 극심한 복통	50	50	51	52	52	54	55	57	59	61	

IX. 충수염(appendicitis)

A. 급성, 수술 후 결과 양호한 것	0										
B. 수술 결과 불량한 것 ----- 유착증 부분 참조											

X. 소장염, 대장염, 변비, 설사

A. 원충성(아메바성) 또는 세균성											
1. 적절한 치료 후 경한 단기간의 카타르(catarrhal)성 증	5	5	6	7	9	11	13	16	19	22	
2.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	15	15	16	17	18	20	22	24	27	30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궤양성, 출혈성의 심한 증상	30	30	31	32	33	35	37	40	43	46	

XI. 궤양(ulcer)

A. 경한 수술 속발성, 간헐적으로 악화하는 수술하지 않은 궤양	0										
B. 중등도의 수술 후유증, 빈번한 악화 또는 수술할 수 없는 궤양으로 특별한 식이요법이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	15	15	16	17	18	20	22	25	28	31	
C. 수술하지 않은 심한 궤양, 식이요법이나 안정으로 호전되지 않는 출혈 또는 잠재성 출혈, 지속적인 위 증상	30	30	31	32	33	35	37	39	42	45	
D. 외과적 또는 비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극심한 증상, 전신상태불량, 장기휴무를 요함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XII. 간장(liver)

A. 간경변증											
1. 간비대, 경한 황달, 경한 오심, 구토, 간헐적 휴무를 요함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2. 간비대, 과민, 황달, 중등도로 심한 위증상, 오심, 구토, 복수는 없음, 주기적인 휴무 요함	25	25	26	27	28	30	32	34	37	40	
3. 심한 중독증상, 전신상태 악화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4. 극심한 증상, 복부팽만, 복수, 부분적 정맥 폐색, 장기휴무	75	75	76	77	78	79	80	82	84	87	
B. 담낭염, 담석증											
1. 황달, 완고하고 간헐적인 경한 산통발작, 휴무 요하지 않음	0										
2. 간헐적인 심한 산통, 급성 황달, 오한, 발열, 수일간 휴무요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비뇨기생식계의 손상과 질병

I. 신장(kidney, 콩팥)

A. 한쪽 콩팥 상실, 타측 정상	25	25	26	27	28	30	32	34	37	40
B. 한쪽 콩팥 상실, 타측 장애 또는 기타 손상										
1. 경증	40	40	41	42	43	44	46	48	51	54
2. 중등증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3. 중증	65	65	67	68	69	70	71	73	75	78
4. 극심	100									
C. 신장염										
1. 경증, 뇨에 단백질 흔적만 있음, 심장 및 혈압 정상	0									
2. 중등증, 지속적 단백뇨, 뇨 원주 및 경한 죽부의 부종	10	10	11	12	13	15	17	19	22	25
3. 중증, 현저한 단백뇨, 뇨 원주 및 하지 부종, 심장증상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4. 극심한 단백뇨, 뇨 원주, 혈뇨, 심한 부종, 빈번한 휴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D. 신우신염 ----- 신장염 부분 참조										
E. 신장결석, 신석증										
1. 간헐적인 산통발작, 1~2일 내에 회복, 수술결과 양호	0									
2. 빈번한 심한 산통발작, 1~2주의 휴무 요, 수술할 수 없음	25	25	26	27	28	30	32	34	37	40
F. 수신증(hydronephrosis)										
1. 간헐적인 경한 산통, 감염이나 합병증 없음	0									
2. 빈번하고 중등도로 심한 산통발작, 배액처치 필요	10	10	11	12	13	15	17	19	22	25
3. 빈번한 휴무, 입원 필요, 신장기능의 심한 손상	20	20	21	22	23	25	27	29	32	35

II. 방광

A. 만성방광염										
1. 경증, 주기적인 악화, 빈뇨, 뇨사	0									
2. 감염, 뇨사, 빈번한 배뇨시의 통증, 간헐적 휴무 필요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3. 감염, 전신증상, 중증, 주기적 입원 필요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4. 장구 착용을 요하는 요실금	35	35	36	37	38	40	42	45	48	51
B. 누관(fistula)										
1. 수술 후에도 보호장치 착용 필요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C. 방광과열										
1. 합병증 없이 외과적 처치한 경우	0									
2. 구축과 섬유증식증으로 노무에 자극 받음	20	20	21	22	23	26	28	29	30	31

III. 뇨도(urethra)

A. 점막층의 파열, 뇨생식격막으로부터 전립선과 방광의 분리										
1. 조기 외과적 처치, 간헐적 확장술을 요하는 중등도의 협착	5	5	6	7	8	9	11	13	14	16
2. 만기 외과적 처치, 뇨실금과 뇨침윤을 초래한 경우	50	50	51	52	53	55	57	58	60	62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B. 구상 뇨도(소위 파좌손상)											
1. 외과적 처치후 협착 중등도, 간헐적 확장술 필요	0										
2. 빈번한 확장술과 휴무 필요	15		15	16	17	18	19	21	23	24	26
C. 진자양 뇨도(pendular urethra)											
	15		15	16	17	18	19	21	23	24	26
IV. 음경(penis)											
A. 1/4이상 상실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B. 성교불능, 발기불능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V. 고환(testes)											
A. 정계정맥류	0										
B. 고환수중수술	0										
C. 한쪽 위축	0										
D. 양측 상실	40		20	21	22	23	25	27	30	33	36
E. 고환염, 부고환염											
1. 중등도, 만성, 외과치료로 호전 안됨, 간헐적 휴무 필요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2. 중증, 전립선과 정관에까지 파급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관절염

I. 류마치성 ; 위축성, 비후성

- A. 보통의 전신증상, 다발성 관절 침습, 구축 없음, 부은 것은 정상회복, 경도의 완고한 동통과 피로, 년 1회 이내 휴무 필요
15 15 16 18 20 22 24 29 31 34
- B. 일반적 전신증상은 A와 동일, 년 2~3회 휴무 필요
25 25 26 27 29 31 33 36 39 42
- C. 일반적 전신증상은 A와 동일, 완고한 관절 종창, 구축이 시작되지만 노무에는 지장 없는 상태, 년 3~4회의 침상안정을 요함
40 40 41 41 44 46 48 51 54 57
- D. 일반적 전신증상은 C와 동일, 개별적인 관절구축, ----- 관절강직에 대해서는 추가로 장애 평가하고, 심장합병증은 심장장애표에 따라 따로 장애평가함.

II. 골관절염 ; 퇴행성, 비후성

- A. 일반증상 : 다수 관절침범, 구축 없음, 경도의 동통 ; 고관절, 척추, 슬관절 및 수지의 골변연순화, 휴무는 불필요
5 5 6 8 10 11 12 13 14 16
- B. A와 동일. 1개 이상의 주요관절에 중등도로 심한 동통의 재연을 동반, 매년 1~2회 휴무 필요
15 15 16 17 19 21 23 24 26 27
- C. A 및 B와 동일. 다수의 동통성 관절종창, 장기간 휴무 필요
40 40 41 42 44 46 48 51 54 57
- D. A,B,C와 동일. 개별적인 영구적 폐용관절 ----- 강직에 해당하는 상실율을 추가로 평가함.

III. 감염, 화농성

- A. 단일관절 ----- 강직 부분 참조
- B. 복수관절 ----- 류마티형과 강직 부분 참조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IV. 섬유조직염

A. 일반증상 : 완고한 정도의 동통, 피로, 심부인대 및 근 침범, 경부·배부·고부의 인대침범, 년 1~2회 휴무 필요, 감염의 확진은 불가능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B. A와 동일. 중등도의 증상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C. A와 동일. 중증, 침상안정 요함. 계속적인 동통과 피로	30	30	31	32	33	35	37	40	43	46
D. 영구적으로 침범된 경부, 배부 또는 기타 주요관절 -----	강직 부분 참조									

V. 이단성 골관절염

A. 다수의 관절에 유리체 존재 : 경한 주기적 침습, 직업병의 의증, 간헐적인 작업장해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B. A와 동일. 중등도의 증상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C. 유리체의 외과적 적출술을 요하는 심한 개별적 관절침범 -----	강직 부분 참조									

VI. 통풍(gout)

A. 경증의 주기적 침습이 다종의 관절발생, 직종에 따라 2년에 1회 정도 악화	5	5	6	7	9	10	12	13	14	15
B. A와 동일. 중등도의 중증, 년1회 정도의 휴무 필요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C. A와 동일. 중증, X선 소견상 관절변형, 작업의 종류가 제한되는 중등도의 관절강직	25	25	26	27	29	30	31	32	33	34
D. 족지, 수지, 슬관절의 개별적 관절침범 -----	강직 부분 참조									

VII. 활액낭염

A. 경증의 주기적인 활액낭염이 여러 부위에 있고, 어떤 직업에는 예민함. 간헐적 휴무 필요	5	5	6	7	9	10	12	13	14	15
B. A와 동일. 중등도의 증상임.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C. 외과적 요법을 요하는 개별적 관절침범 -----	강직 부분 참조									

VIII. 건초염

A. 경도의 주기적인 건초염이 여러 부위에 있고, 어떤 직업에는 예민함. 간헐적 휴무 필요	5	5	6	7	8	9	10	11	12	13
B. A와 동일. 중등도의 증상	10	10	11	12	13	14	15	17	20	23
C. 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심한 개별적 관절침범 -----	강직 부분 참조									

IX. 외상성 관절염 ----- 강직 부분 참조

X. 근염 ----- 강직 부분 참조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결 핵

A. 비활동성

1. 과거의 치료성적이 양호한 4년차, X선 소견 양성, 객담검사 음성, 체중 감소 없음, 공동 없음, 흉부수술이나 병소 확대소견 없음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2. 적극적 치료 3년 경과, 객담검사 소견이 계속 음성, 중등도의 전신증상, 주기적 미열, 체중유지곤란, 공동 없음, 흉부수술 시행 안함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3. 적극적 치료 후 2~3년 경과, 객담검사 소견 음성,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 잠재성 나음, 체중유지곤란, 흉부수술 시행, 치료성적 양호	30	30	31	32	33	35	37	40	43	46

B. 활동성

지속성 및 진행성, 중증, X선 소견 양성, 공동 존재, 객담검사 소견 양성, 입원 또는 격리치료 필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	-----	-----	-----	-----

C. 합병증

1. 타 장기의 결핵 ; 흉부수술 동반 여부 불문하고 활동성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	-----	-----	-----	-----

흉곽의 손상과 질병

I. 늑골골절

A. 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 심한 운동시 통증	5	5	6	7	9	11	13	16	19	22
B. 폐손상, 동통을 수반한 완고한 유착증	15	15	16	17	18	20	22	25	28	31
C. A와 동일. 동통 있음(자발통)	10	10	11	12	14	16	18	21	24	27

II. 흉골병(흉골체부)의 골절, 호흡장애를 동반한 함몰

15	15	16	17	18	19	21	24	27	30
----	----	----	----	----	----	----	----	----	----

III. 만성 늑막염

A. 치유된 농흉

1. 완고한 늑막 마찰음, 심한 운동시 국소 통증, 점차 호전	0									
2. 2~3개 늑골절제 후 치료됨, 심한 운동시 명확한 장애	10	10	11	12	14	16	18	21	24	27
3. 광범위한 늑골절제, 장기적 배농술, 심막 및 늑막 유착으로 명확한 장애가 있는 것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4. 심한 변형을 초래한 흉곽성형술 시행, 심막과 늑막장애, 호흡곤란, 일반상태 불량, 운동시 쉽게 피로	75	75	76	77	78	80	82	84	86	89

B. 결핵성 늑막염

흉곽성형술 시행 후의 후유증 ----- 농흉의 후유증에 비교하여 장애 평가

C. 늑막강 손상

외상으로 인한 결손, 흉곽성형술 후유증 ----- 농흉에 준해서 평가

IV. 만성기관지염

A. 완고한 해소, 체온 상승 없음, 심한 운동시 정도의 호흡곤란	5	5	6	7	9	11	13	16	19	22
--------------------------------------	---	---	---	---	---	----	----	----	----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B. 완고한 해소, 간헐적 미열, 치료 위한 안정 필요, 심한 운동시 중등도의 호흡곤란, 중등도의 폐기종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C. 심한 발작성(경련성) 해소, 현저한 다량의 객담, 치료를 위한 안정이 반복적으로 필요, 운동시 심한 호흡곤란, 전신 상태 불량, 수면불량, 식욕부진, 신경증	40	40	41	42	42	45	47	49	51	54
D. 폐확장부전증(무기폐)을 동반한 극심한 증상	60	60	61	62	63	65	67	69	71	74

V. 기관지천식 ----- 만성기관지염 부분 참조

VI. 기관지확장증 ----- 관절염, 골관절증, 뇌감염 또는 폐농양이 없는 경우 만성기관지염과 동일 평가

VII. 폐기종 ----- 만성기관지염과 동일 평가

VIII. 진폐증 ----- 만성기관지염과 동일 평가

심장질환, 심장혈관계

I. 심근염, 심막염(심낭염), 심내막염, 판막질환

A. 국소병변 경미, 한정된 육체적 활동 가능, 불쾌감 없음, 피로, 호흡단축 또는 족부 부종	5	5	6	7	8	9	10	11	12	14
B. 국소병변, 제한된 작업에도 경미하지만 명백한 불쾌감·피로·호흡단축이 있으며 치아노제는 없으나 운동시 부정맥이 나타나는 것	20	20	21	22	23	24	25	26	27	28
C. 국소병변과 증상 B와 동일, 치아노제와 맥박부정을 동반, 위 증상들이 침상안정으로 잘 호전됨	50	50	51	52	53	55	57	60	63	66
D. 점증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병변, 침상안정으로 대상부전증상이 충분히 호전됨, 앉아서 하는 일에만 종사할 수 있음.	75	75	76	78	79	81	83	85	88	91
E. 장기간 침상안정을 요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병변, 앉아서 하는 일에 의해서도 호흡곤란이 경미한 호전 또는 무호전 및 대상부전증이 완고한 것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II. 협심증

A. 명백한 국소병변 없고, 신속회복 가능한 통증 발	5	5	6	7	8	9	11	12	13	14
B. 병변과 E.C.G.로 확인된 정도의 국소증상, 수일간의 안정으로 회복되는 간헐적인 통증발작	10	10	11	12	13	14	16	17	18	19
C. 병변과 심한 국소증상, 3~6주일마다 발작, 심장증상이 항상 호전되지 않은 상태	40	40	41	42	43	44	45	47	48	49
D. 병변과 극심한 국소증상, 운동시마다 발작, 점진적대상부전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III. 관상동맥질환

A. 단일발작, 소견 음성, 침상안정으로 완전 회복, E.C.G. 음성 0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B. 한정된 작업으로도 2회째 발작, 신체소견 완고, E.C.G. 양성	50	50	51	52	53	55	57	59	62	65	
C. 한정된 작업으로도 3회째 발작, 명백하고 완고한 신체소견, E.C.G. 양성, 침상안정으로 무호전	75	75	76	77	78	80	82	84	86	89	
D. 안정 취해도 심한 증상, E.C.G. 양성, 신체소견 양성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IV. 빈맥											
A. 기능적 심장병변 없음, 드물고 경한 발작	0										
B. 기능적 심장병변 없음, 3개월마다 발작, 안정시 맥박 지속적으로 100/m 또는 그 이상	0										
C. 기능적 심장병변과 인과관계, 빈발한 발작, 안정시 맥박 100~120/m	10	15	16	17	18	19	21	22	24	25	
D. 발작적(경련성) 빈맥, 명백한 중등도의 심장호흡기 병변	20	20	21	22	23	24	25	26	28	29	
E. 발작적(경련성) 빈맥이 보다 중증의 심장호흡기병변을 동반	50	50	51	52	53	54	56	59	62	65	
V. 대동맥 또는 큰 동맥지의 동맥류											
A. 경도의 팽창, X선으로 확인된 무증상	0										
B. 중등도 팽창, 점진적 악화증상, 외과요법 호전가능	50	50	51	52	53	55	57	59	61	64	
C. 고도팽창증상, 진행성 및 절박성, 외과요법 호전불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VI. 작은 주요 동맥의 동맥류											
A. 경도, 명백한 팽창, 증상 경미, 휴무 불필요	0										
B. 중등도 팽창, 점진적 악화, 외과요법 호전불능, 전직 필요	20	20	21	22	23	24	26	29	32	36	
C. 심한 팽창, 점진적 악화, 외과요법 호전불능, 노무 엄격제한	50	50	51	52	53	55	57	59	61	64	
VII. 동정맥의 류											
A. 경한 박동장애증상, 휴무 불필요	5	5	6	7	8	10	11	13	14	16	
B. 중등도 증상, 진행성 팽창, 외과치료 호전가능, 전직 필요	20	20	21	22	23	24	26	29	32	36	
C. 심한 진행성 팽창, 외과요법 호전불능, 노무 엄격제한	50	50	51	52	53	55	57	59	61	64	
D. C의 증상이 극심하고 중증의 심장상태 동반	75	75	76	77	78	79	81	83	85	88	
VIII. 동맥경화증, 전신성											
A. 수축기혈압 160 이상의 혈압상승, 육체적 정신적 증상 무	0										
B. 수축기혈압 160 이상의 혈압상승, 경한 신장, 심장, 뇌증상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C. 수축기혈압 190, 그에 상응한 이완기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 신장과 심장 또는 뇌증상이 진단된 것	50	25	26	27	28	30	32	35	38	41	
D. 수축기혈압 200, 그에 상응한 이완기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심장 또는 뇌증상을 동반한 것	75	60	61	62	63	65	67	69	71	74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X V. 색진증 ----- 정맥염, 흉곽, 심장의 평가 참조

X VI. 간헐성 파행증

A. 양하지

1. 장거리 보행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정도의 피로와 빈번한 휴식 요구됨

5 5 6 7 9 11 14 17 20 23

2. 장거리 보행시 중등도 피로, 경련, 통증, 빈번한 휴식 15 15 16 17 18 19 20 22 23 24

3. 단거리 보행 심한 피로경련과 통증, 절대 입원 안정 요 35 35 36 37 38 40 42 46 49 52

4. 극도의 전신성 동맥경화증, 입원 요하나 호전불가능, 단거리 보행 심한 동통 및 경련
60 60 61 62 63 64 66 68 70 73

B. 한쪽 다리 ----- 양하지 평가에서 1측으로 감산하여 평가함

X VII. 사지의 궤저 ----- 해당부위의 절단부분 참조

두부, 뇌, 척수

I. 뇌손상 없는 골절

- A. 기질적인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골절 0

- B. 기질적인 신경학적 손상 없는 직경 1inch의 민감한 두개골결손부의 존재

5 5 6 7 8 10 12 15 18 21

- C. 기질적 신경학적 증상없는 2inch의 민감한 두개골결손부존재

14 14 15 16 17 19 21 24 27 30

II. 뇌손상을 수반한 골절(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완고한 압박증상)

A. 심한 뇌신경마비

1. 제1, 2, 3, 4, 5, 6 및 8뇌신경 ----- 눈 및 귀의 평가 참조

2. 제5뇌신경 : 최고한(안면통 및 마비는 감산하여 평가) 18 18 19 20 21 23 25 28 31 34

3. 제7뇌신경 : 최고한(추상의 변형, 언어기능은 감산 평가) 16 16 17 18 19 21 23 26 29 32

4. 제9뇌신경 : 최고한(연하장애는 감산 평가) 5 5 6 7 8 10 12 15 18 21

5. 제10뇌신경 : 최고한(언어, 위증상, 심장장애는 감산 평가) 30 30 31 32 33 35 37 40 43 46

6. 제11뇌신경 : 최고한(경부 또는 견부의 마비에 있어 평가)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7. 제12뇌신경 : 최고한(혀의 사용, 저작연하의 곤란의 평가)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III.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

- A. 경미한 주기적 발작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 B. 중등도, 지속성 30 30 31 32 33 35 37 40 43 46

- C.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70 70 71 72 73 74 76 78 81 84

- D.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하지의 마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IV. 소뇌성, 청각성 현훈 ----- 운동실조증 부분 참조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X. 전간(epilepsy)

1. 대전간(중증전간)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침해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적으로 오는 1~2년간 발작이 없는 것	0													
B.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명백히 침해된 것														
1. 년 1회 이내의 경도의 경련발작	10	10	11	12	13	15	17	19	22	25				
2. 투약으로 억제되는 6월에 1회의 중등도의 경련발작	20	20	21	22	23	24	26	28	31	34				
3. 투약으로 억제안되는 2~3월마다의 심한 경련발작	40	40	41	42	43	45	47	50	53	56				
4. 매월 극심한 경련발작, 정신상태양호, 신체기능상실없음	60	60	61	62	63	65	67	70	73	76				
5. 신체적장애, 정신상태황폐, 매주1회 경련발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소전간(발작)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침해 없음	0													
B.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침해														
1. 6월~1년 1회 이내 경도의 일시적 의식상실	0													
2. 3월 1회의 중등도 의식상실, 투약으로 억제	10	10	11	12	14	16	18	21	24	27				
3. 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쇠약과 둔마를 야기한 것 투약으로 억제 불능	20	20	21	22	24	26	28	31	34	37				
4. 월 1회 이상 극심한 의식상실, 둔마, 신경증, 2~3 시간의 작업만 가능, 빈번한 휴무	60	60	61	62	64	66	68	71	74	77				

3. Jackson형 전간 ----- 소전간과 동일

안 면

I. 약의 골절(추상을 포함)

A. 부정교합이 합병된 상악골	8	8	8	9	9	10	11	12	13	14
B. 부정교합의 하악골	8	8	8	9	9	10	11	12	13	14
C. 과상돌기의 통증을 반한 교합	8	8	8	9	9	10	11	12	13	14

II. 측두하악관절의 강직 : 운동이 1/4~1/2인치로 제한 10 10 11 13 15 17 19 21 23 25

III. 전치의 상실로 보철 15 15 16 17 18 19 21 23 25 27

IV. 혀의 상실 : 1/3 15 15 16 17 18 19 21 23 25 27

V. 귀바퀴의 상실 5 5 5 6 6 7 9 11 13 15

VI.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코의 손상 7 7 7 8 8 9 10 12 14 16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동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귀

한쪽 귀를 막고 1, 2, 5, 10, 15, 20피트에서 보통의 대화에 관한 청력의 측정에 기초를 둔 평가임. 20~40피트는 정상

1. 청각의 기질적 상실, 공기 진도 및 골진도의 결손이 한측 귀에 온 것

● 타측귀의 청력 완전 상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타측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60	60	63	67	71	74	78	82	86	91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55	55	58	62	66	69	73	77	81	86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50	50	53	57	61	64	67	71	75	80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40	40	43	47	51	54	58	62	66	71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20	20	22	25	28	30	33	37	41	45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10	10	12	15	18	20	23	26	29	33	

2. 한쪽귀의 골진도가 있는 것, 통상의 청각은 없음

● 타측귀의 골진도 있음	70	70	73	77	81	84	88	92	96	100
● 타측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50	50	53	57	61	64	67	71	75	80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45	45	48	52	56	59	63	67	71	76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40	40	43	47	51	54	58	62	66	71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30	30	33	36	39	43	46	50	54	59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15	15	17	19	22	26	28	31	34	38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10	10	12	15	18	20	23	26	29	33

3. 한쪽귀가 1피트에서 가청

● 타측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40	40	43	47	51	54	58	62	62	71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30	30	33	36	39	43	46	50	54	59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25	25	27	30	33	36	39	43	47	51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20	20	22	25	28	30	33	37	41	45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10	10	12	15	18	20	23	26	29	33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7.5	7.5	8	9	10	12	15	18	21	24

4. 한쪽귀가 2피트에서 가청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30	30	33	36	39	43	46	50	54	59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20	20	22	25	28	30	33	37	41	45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15	15	17	19	22	26	28	31	34	38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10	10	12	15	18	20	23	26	29	33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7.5	7.5	8	9	10	12	15	18	21	24

5. 한쪽귀가 5피트에서 가청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20	20	22	25	28	30	33	37	41	45
--------------------	----	----	----	----	----	----	----	----	----	----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애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장애의 직업별 장애평가 직업장애계수(1~9)의 적용								
	당해부분 장애율	전신 장애율	1	2	3	4	5	6	7	8	9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15		15	17	19	22	26	28	31	34	38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10		10	12	15	18	20	23	26	29	33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5		5	6	7	8	10	12	14	17	
6. 한쪽귀가 10피트에서 가청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15		15	17	19	22	26	28	31	34	38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10		10	12	15	18	20	23	26	29	33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2.5		2.5	3	3	4	5	6	7	9	11
7. 한쪽귀가 15피트에서 가청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2.5		2.5	3	3	4	5	6	7	9	11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0		0	0	1	1	2	2	3	4	5

시력장애와 전신노동상실률표

장애정도		장애정도		장애정도		장애정도	
시각%	몸전체%	시각%	몸전체%	시각%	몸전체%	시각%	몸전체%
0	0	23	22	46	43	69	65
1	1	24	23	47	44	70	66
2	2	25	24	48	45	71	67
3	3	26	25	49	46	72	68
4	4	27	25	50	47	73	69
5	5	28	26	51	48	74	70
6	6	29	27	52	49	75	71
7	7	30	28	53	50	76	72
8	8	31	29	54	51	77	73
9	8	32	30	55	52	78	74
10	9	33	31	56	53	79	75
11	10	34	32	57	54	80	76
12	11	35	33	58	55	81	76
13	12	36	34	59	56	82	77
14	13	37	35	60	57	83	78
15	14	38	36	61	58	84	79
16	15	39	37	62	59	85	80
17	16	40	38	63	59	86	81
18	17	41	39	64	60	87	82
19	18	42	40	65	61	88	83
20	19	43	41	66	62	89	84
21	20	44	42	67	63	90~100	85
22	21	45	42	68	64		

시각의 장애	몸전체의 장애
한눈시력 완전상실 ----- 25%	24%
양눈시력 완전상실 ----- 100%	85%